

<b>보도 참고 자료</b>	
 <b>한국전문간호사협회</b> <small>KOREAN ASSOCI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small>	2020년 9월 11 일 배포
	참고하여 기사 작성
	총 쪽, 사진 : 없음
담당 : 정책이사 김은미, 김소연 전화 : 01047107890 / 01072093502 주소 : 055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연구동 지하1층 울산대학교 임상전문간호학	

## 「전문간호사 업무 범제화는 시대적 응답」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코로나19로 논의가 중단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절차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중증환자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가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

○ 또한 부족한 일부 의료인력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일반 간호사와는 달리 상급간호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다.

○ 의료법 제78조 개정('18.3.27)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시행규칙('20.3.28)에 정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부터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를 시행한 후 이를 근거로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유관 단체간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힘.

- 간호계에서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전문간호사업무범위안을 보건복지부에 모두 제출함(2020.01).

- 2020년 3월 28일, 개정된 의료법(제78조)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 하위법령 명문화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임.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고 전문간호사들이 합법적 업무 수행으로 환자 안전을 수호하도록 조속히 업무범위 설정 논의 절차를 조속히 재개하고 법 시행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전문간호사 실무 대표 단체인 한국전문간호사협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 전문간호사 제도 경과 및 현황

- 2000년 의료법에 ‘분야별 간호사’의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어 전문간호사 직제에 대한 법률적 기초가 세워졌으며, 2003 ‘전문간호사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10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로 자격을 명시하여 본격적으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 2006년에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상급실무간호사로서의 전문간호사가 입법화됨.
  - 이후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보건,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확대됨.
  - 1990년대 이후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진료과들의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기존 간호업무와는 다른 다양한 진료 지원 업무를 경력 간호사들에게 병원현장의 요구에 따라 전담간호사, Physicia Assistant(PA), Surgical Assistant(SA), Nurse Practitioner(NP), Clinical Nurse Specialist(CNS) 등 병원 나름의 명칭 하에서 부과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12월 현재 배출된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5,718 명임.

□ 보건복지부와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은 PA등 불법인력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대안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시해 왔다.

○ PA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속히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PA 업무 중 전문간호사의 업무로 해결 가능한 업무는 포함하고, 현행법 상 과도하게 위법 행위에 가까운 업무는 의사가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기관의 요구에 의해 PA 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전문간호사 제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국내 PA(Physician Assistant)는 의료법의 근거 없이 각 기관에서 편의적으로 부르고 있는 명칭으로,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진료과나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를 돕고 있는 인력이다. 외국에서는 PA의 진료 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 의료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력이므로 현재 이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의사단체는 최근 PA를 불법의료행위로 고발하고 있다.

○ PA의 대부분은 간호사이며, 88%가 3년제 학위나 학사 출신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해당 진료과의 의사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인력들이 진료영역에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전문간호사는 간호학사 취득 후 적어도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만이 전문간호과정 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고 2.5년의 대학원

과정을 통해 상급실무수행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받은 후, 의료법에 의거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 전문간호사는 심층적인 환자교육과 상담이 가능하며 행위나 술기 중심의 PA업무와 달리 통합적으로 환자문제를 평가하고 다학제 진료팀에 포함되어 조정역할에 적합한 인력이다. 이는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전문간호사들이 환자와 의료진으로부터 평가 받은 만족도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법에 규정이 되면 전문간호사는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PA는 의료법에 없는 직역이므로 여전히 불법의료 행위와 관련된 문제는 남아 있게 된다.
- 우리나라는 구미 국가들과 지리적, 역사 사회적 여건이 다른 바,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양성하여 별도의 직역으로 운영하는 PA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책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의사보조인력(소위 Physician's Assistant) 실태 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 보건복지부 정책 연구,2011)

- 정부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19년 간호사의 직무범위를 논하는 협의체에서 의사단체의 보수적 입장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한 채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